##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광 성 의원입니다.
- □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 현재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는 자연재해로 인정하여 계량기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사용자등에게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의 계량기 동파는 보온상태 부실 등 수도사용자등의 관리 부주의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량기 관리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동 조례안은 수도계량기가 동파나 자연재해로 파손되는 경우수도계량기 교체에 드는 비용에 대해 그 일부를 수도사용자등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수도계량기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